#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4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주민·김민철·이동주

강병원 · 김종민 · 양향자

윤재갑 • 전용기 • 진선미

이상직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의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8제2항).

나.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제2항 후단 중 "사유"를 "사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 단체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
| 축·운영 등) ① (생 략)                 | 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 ②                                |
|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                                  |
|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                 |                                  |
| 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                                  |
| 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                |                                  |
| 별한 <u>사유</u> 가 없으면 요청에 따        | <u>사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u>           |
| 라야 한다.                          | <u>유는 제외한다)</u>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55조(과태료) <u>&lt;신 설&gt;</u>    |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8제2             |
|                                 | 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                 |
|                                 | 출하지 아니한 체육단체 등에                  |
|                                 |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부과한다.                            |
| <u>①</u> ~ <u>③</u> (생 략)       |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
|                                 | 항까지와 같음)                         |
|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 <u>⑤</u> <u>제4항</u>              |
|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                                  |
|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                                  |
| 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